

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법 (안)

— 기본구조와 내용은 이렇다 —

1. 입법배경 및 목적

환경기급시설은 계속 확충될 것임에도 불구하고,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적용을 위한 근거 법령이 미비되어 비용부담제도의 골격 및 운영체계가 미확립되어 있었고, 새로운 환경수요에 의한 지역단위 공공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를 위한 재원의 발굴 및 분담체계 정립 필요

가 있다. 따라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오염의 방지 및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의 합리적 적용으로 자율적인 환경오염규제와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,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.

② 시행자의 범주
국가사업 : 국가행정기관, 수
지방자치단체장
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원 : 지
방자치단체장 또는 환경관리공
단 이사장

2. 기본구조

1.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시행자

①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의 범위

현행(환경보전법 제 4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 조)	제정법(안) 제 3 조
녹지형성, 중앙열공급시설, 공공용공지의 설치와 관리	좌 동
신 설	소음방지시설 및 차폐시설의 설치 및 관리
준설도수 및 종합폐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	하수종말처리장, 농공지구 오·폐수처리장, 지역공동 오·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사업 추가
복토, 삭토 또는 시설개축	좌 동
배수설비	삭 제
주택시설의 이전사업	좌 동
신 설	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2. 원인자의 범위
① 사업자 단일부담(100%)
→ 사업자
국가, 지방자치단체
직접수해집단
② 원인자별 사업별 부담총액의 범위법정

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〉

- 녹지, 공공용한지 및 소음 방지 차폐시설 : 1/4 - 1/2
- 준설도수, 하폐수처리장 농공지구 및 지역공동 오·폐수처리시설 : 1/2 - 1/4
- 객토, 복토, 주민이주 사업 : 1/2 - 1/4

3. 비용부담금

① 구 분
공공부담금 - 국가 및 지방
자치단체

사업자 부담금 - 사업자 및
수해단체

- ② 범위 : 실시계획 조사비
• 공사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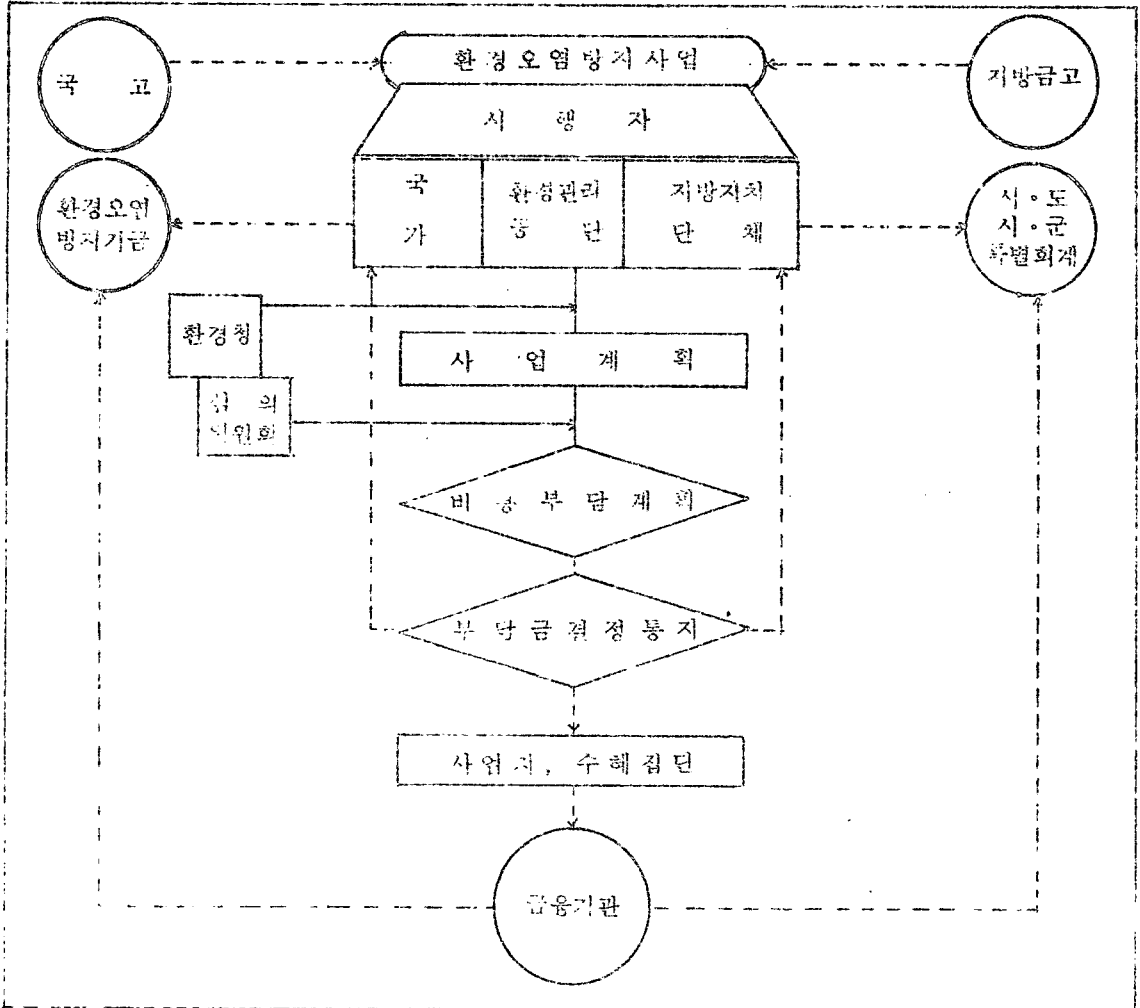
사업장
 사업장
 사업장
 사업장

- 사업장
 사업장
 사업장
 사업장
 사업장
 사업장

사업장
 사업장
 사업장
 사업장
 사업장
 사업장

③ 비용부담제
 시행하기 환경정책의 승인 및
 비용부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
 정

3. 제도의 운영체제



1. 관련조치
2. 비용부담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
3. 환경정책결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의견 조정에 환
4. 예산조치: 필요없음